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5가합52522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 고 A

변론 종결 2015. 8. 17.

판결 선고 2015. 9.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4. 11. 2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4. 11. 27. 접수 제12567호로
마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와 주식회사 천진산업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B의 연대보증

가) 원고는 2013. 2. 27. 주식회사 천진산업(이하 '천진산업'이라 한다)과 보증원금 2억 2,500만 원, 보증기한 2014. 2. 27.(이후 2015. 2. 27.로 변경됨)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천진산업은 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3. 2.2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대출'이라 한다).

나)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천진산업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천진산업의 자금사정 악화 및 이자 연체

천진산업은 2014. 10.경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대출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4. 12. 1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2015. 3. 17.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229,444,194원(원금 2억 2,500만 원 + 이자 4,444,1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 설정

1) 피고는 2014. 2. 7. 천진산업과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월 3%의 선이자를 공제한 2,910만 원을 천진산업의 기업은행 계좌(053-082406-04-011)로 송금해주었다.

2) 천진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는 천진산업과 B에게 채권보전조치를 요구하였다. B은 2014. 11. 26.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4. 11. 27. 접수 제1256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주었다.

다. B의 재산상태

1) B은 2014. 11. 26.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27,022,000원이다.

2) B은 2014. 11. 26. 당시 소극재산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8,425,19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표]

순번	채권자	채무액 (원)
1	원고(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채무)	229,444,194원
2	국민은행	12,500,000원
3	피고	30,000,000원
4	신한카드	10,600,000원
5	중소기업은행	359,881,000원
6	중소기업중앙회	56,000,000원
합계		698,425,194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2014. 11.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당시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미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다. 당시 천진사업의 재산상태에 비추어볼 때, 가까운 장래에 천진산업과 B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5.

3. 17.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229,444,194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에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의 대여금 채권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2014. 11. 26. 당시 B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소결

B과 피고가 2014. 11.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현정, 판사 진영현, 판사 류지미